(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58호

`24년도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 스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별기술, 제품, 마케팅 등 특화된 경쟁력의 상호 협력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을 위해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Ⅱ 지원개요

-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10.31.
- □ (지원규모) 4개 협업프로젝트 지원(프로젝트당 75백만원 내외)
 -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차등지원 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스타기업 주관 협업프로젝트 4개 과제
- □ (지원내용) 사업화 매출이 가능한 비R&D 지원(75백원 내외/1개 과제당)
- 협업유형

| 협업 유형 | 지원내용 |
|-------|--|
| R&D | 산업·기술간 융합에 의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주관 또는 참여기업의 보유 핵심기술, 기술 노하우 등의 협업을 통한 제품 |
| 중심형 | 고급화, 신제품 개발, 공동기술 개발지원 |
| 생산 | 주관·참여기업의 제품 생산시설, 설비 등의 인프라 활용을 통함 생산 비용절감, |
| 중심형 |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개선, 시장점유확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 주관·참여기업이 보유한 마케팅 채널 및 역량 등을 활용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 마케팅 |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보유한 영업, 마케팅 채널 및 역량 등을 활용한 국내·외 |
| 중심형 | 시장 진출 지원 |
| 지식서비스 | • 기타 주관·참여기업간 상품기획, 시장조사, 소비자조사,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
| 중심형 | 제작, 생산 유통 협업 지원 |

- 사업비 지원 분야 예시

| | 기술이전 | • 국내 기술 이전 지원 | |
|---------|---|----------------------------|--|
| | 해외 인증지원 |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술장벽 대응 지원 | |
| | 국내 인증지원 | • 국내 제품인증 지원 | |
| 기스청시 되의 | 자가공장 지원 | • 공정효율화 컨설팅 지원 | |
| 기술혁신 지원 | 기술지도 | •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 |
| | 제품고급화 | • 기술 및 품질 개선품 제작 지원 | |
| | 시제품제작 | • 개발제품/개선품 시제품 제작 지원 | |
| | 기술인력 역량강화 | • 기술전문가 양성 | |
| | 상품기획 | • 시장 맞춤형 상품기획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
| ᄉᅔᅚᅁ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
| 수출지원 |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 • 국내/외 시장조사 | |
| | 해외 마케팅 지원 |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대응 | |
| 미어취 되어 | 국내 마케팅 지원 | • 기존 거래처와 유사한 거래처 발굴 지원 | |
| 사업화 지원 | 컨설팅 지원 | • 경영 컨설팅 지원 | |
| 기 타 | 기 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 수출지원, 사업화 분야 지원 등 | | |

□ (지원방법) 스타기업이 주관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협업 유형 선택 후 협업 과제 기획 시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주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 **(주관기업)** 2018년~2022년에 지정된 제주지역 스타기업 48개사
 - * 스타기업 중 2022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
- (참여기업) 제주도 지정 스타기업 또는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본사 소재지가 제주이며, 창업 후 3년 이상인 중소벤처기업
 - * 주관은 스타기업, 참여기업은 스타기업 및 도내 중소벤처기업 모두 가능
 - * 참여기업은 1개사 이상(단, 제주 스타기업 이외의 기업 1개사 포함 必)

②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과제별 지원금의 2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현물) 납부해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5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사업비는 기술(제품)개발 및 마케팅 수행 등 직접비로만 편성 가능
 - * 시약 및 재료의 과도한 구매 등 사업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사업비편성은 제외
- 지원금은 다자간(TP-주관기업-참여기업)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업에게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에 대해 TP에서 선정한 회계전문기업의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지원금 지급 이후 과제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에 대한 진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u>'중단'</u> 및 **'불성실 실패'** 판정 시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항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유사지원을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제주테크노파크「사업관리 지침」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확인 사항>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①항의 2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단,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기업 및 대표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 '의결거절', '부적정'인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③ 선정절차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예비진단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주 요 착 안 사 항 | 배점 |
|----------------------|------------------------|--|----|
| | 목표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적정성협업목표의 적절성 | 10 |
| 사업목표 운영체계 (40) | 추진전략 | 사업의 이해도, 추진전략 적절성추진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 10 |
| (10) | 운영체계 | 참여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보유 인프라(기술, 시설, 인력, 네트워크 구성 등) 기업별 역할의 명확성, 적절성 | 20 |
| | 성과 및 실적지표 | 실적, 성과목표 항목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사업비 투입에 따른 성과지표 제시의 적절성 | 20 |
|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이 목표 및 실적,성과와의 연계성사업내용별 추진일정 적정성 | 20 |
| (50) | 사업비 구성 | • 사업 계획 및 내용에 따른 예산편성 적절성 | 10 |
| 기대효과 (10) | 지역사회 공헌 및 일자리 창출 | • 협업의 가시적인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의 우수성 •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10 |

※ 평가기준은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고/접수 | 현장진단 및 | | 협약체결 | \Rightarrow | 사업수행 |
|---------|--------|---------|----------|---------------|--------|
| 3월 | 4월 | | 5월 | | 5월~10월 |
| | | | | | Ţ |
| 사업비 정산 | 최종평가 | | 결과보고서 제출 | Ų | 중간점검 |
| 12월 | 11월 | | 11월 초 | | 7월~8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④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3. 26(화) ~ 4. 19.(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주관기업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상단 좌측메뉴에서 '지원사업'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사업신청 '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제출서류 신청기한 내 온라인(http://jeis.or.kr) 업로드 필수

|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
| 1 | • 신청서(붙임2) | 주관 |
| 2 | •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 참여 |
| 3 | • 사업자등록증 | 주관, 참여 |
| 4 |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① '22.12.31. ② '23.12.31. 기준) | |
| 5 | • 최근 3년('21~'23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주관, 참여 | |
| 6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대표) | 주관, 참여 |
| 7 |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붙임2) | 주관, 참여 |

- *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을 온라인 등록(**기업별로 구분하여 No. 순으로 스캔하여 업로드**)
 - 파일명: ① 제출서류 (주관) 기업명 ② 제출서류 (참여 1) 기업명 ③ 제출서류 (참여 2) 기업명
- * 참여기업의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서류제출 간소화 방침'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 ① 파인드시스템(http://www.findsystem.co.kr, 02-3279-6500) 접속 후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선택 > 보안프로그램 등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설치 > 제출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선택 > 제출서류 3, 5, 6번 선택 > 제출하기 클릭
- ② JEIS 온라인 회원가입
- * 외부기관 발급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
-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 요망

□ 문의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박현민 연구원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기업지원단 | 박현민 연구원 | 064-720-3039 | phm0963@jejutp.or.kr |

○ 시스템(http://jeis.or.kr) 문의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기업지원단 | 김경태 연구원 | 064-720-3077 | kmg1110@jejutp.or.kr |

5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함
 - 공고 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제주테크노파크「사업관리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 □ 평가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함
- □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 □ 기업부담금은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비 전용 통장에 납부하여야 함
-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 신청서 접수 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제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을 통한 성과물에 아래의 내용 반영
 - 제품고급화, 시제품 제작 등: 제품 등에 "비매품" 명시
 - 홍보물(인쇄물, 제품포장디자인, 영상물) 등 제작 시 아래 문구 삽입

본 제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일자 : 2024. . .

- * 크기, 위치: 전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 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발행일자: 협약일 이후, 인쇄한 날을 기준으로 년/월/일 표시

별첨 협업프로젝트 사례

□ 협업 개념

o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 현업 특징

o 자사의 **특화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비특화부문은 협업으로 조달**하여 고정비 및 초기 투자비 부담이 줄어 경**영 위험성 개선 및 원가절감**이 가능

□ 협업 유형

o R&D, 생산, 마케팅, 서비스 협업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협업 사례(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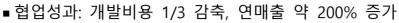
| 구분 | 내 8 | | | |
|-------|--|--|--|--|
| 협업유형 | 마케팅 + 생산 | | | |
| 협업기업 | (주관) 00000 + (참여) 00000 | | | |
| 현안·애로 | 품질은 우수하나 액상 제품 특성상 비싼 물류비, 난해한 유통환경 명확한 제품 컨셉, 스토리를 가진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부재 국내 상품과의 원물 차별화 부재 상품의 신뢰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 부족 | | | |
| 협업방향 | • 상품고도화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판매 확대 | | | |
| 협업내용 | ● 제주의 제한적 유통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존 상품의 고도화 및 신규 원물자원 발굴·상품화 ② 양사 간 생산기술 및 마케팅 노하우 협업 ③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제주 대표 음료 브랜드 육성 | | | |
| 협업 성과 | • 건강음료 부문 매출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약 20억원) -'17년 홈쇼핑 방영 매출 661백만원, '18년 상반기 1,546백만원 - 기존 상품 업그레이드 2종, 신규 상품개발 2종 | | | |

□ 협업 사례(전국)

① **R&D중심형**: (주체) R&D 전문업체 + (참여) R&D·생산·마케팅업체

Α

■ 세륜기 제작기업에서 친환경 무인세차기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총괄개발만 담당하고, 장치·시스템 개발은 협업기업(3개)에게 분담





② <u>생산중심형</u> : (주체) 생산 전문업체 + (참여) R&D·생산·마케팅업체

В

■LCD 특성평가 측정시스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생산만 담당하고 F사(해외)와 G사(국내)에 국내외 영업 협업



■ 협업성과: 3년만에 230% 매출 증가, 100만불 수출 달성

③ 마케팅중심형 : (주체) 마케팅 전문업체 + (참여) R&D·생산업체 등

C

■ 게임기 TET-LCD 모니터 모듈 개발생산판매에 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마케팅과 총괄개발만 담당하고, 금형개발 및 생산·물류 협업



■ 협업성과: 생산라인 폐쇄에 따른 고정비 감소, 일본 1천달러 수출

^④ **지식서비스중심형** :(주체) 서비스 전문업체 +(참여) 서비스·생산업체 등

D

■기존 일회용 마스크 기능개선을 위해 시장조사, 소비자 니즈분석, 디자인만 담당하고, 시제품 제작 및 생산·유통 협업



■ 협업성과: 디자인·제조·유통 업체간 매출공유 1% 협약 체결